



#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

(Version 2.0\_2024.05.31)

솔브레인은 본 규범을 준수합니다.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한철

##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은 구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에서 제정한 기준인 RBA8.0을 바탕으로 6개의 영역[A(노동), B(안전보건), C(환경), D(윤리), E(관리시스템), F(공급망 관리)]에서 상기 규범 준수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은 솔브레인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솔브레인과 협력사의 모든 국내외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근로자가 존중 받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솔브레인과 협력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원부자재 및 상품 등을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각 협력사 사업장에서는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록 및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 및 근로자들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브레인은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은 법규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UN 비즈니스 및 인권 지도 원칙,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협약, UN Global Compact의 10개 원칙과 같은 국제 표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규범과 지역 법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A. 노동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A1. 강제 노동 금지

1)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한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을 포함해야 한다.

2) 근로자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의 출입 및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해야 한다.

3)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외국인 이주 근로자는 출생 국가를 떠나기 전에 서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근로 약관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 채용 국가에서 근로자의 입국 시 근로 계약서의 교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 현지의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변경과, 기존 약관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약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4)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5) 고용주와 인력 알선업체 및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 및 이민 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고용주는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상기 문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6) 고용주는 인력 알선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모집 수수료 또는 고용 관련 기타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근로자가 상기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A2. 연소 근로자

1) 아동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아동"은 15세 또는 의무 교육 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2) 근로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구현해야 하며, 모든 법규에 준수하는 타당한 직장 내 학습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 3)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한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의 수행을 금지한다. 고용주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 관련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 4) 모든 학생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5) 학생근로자, 인턴 및 견습생에 대한 급여 수준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입 사원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 6) 아동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A3. 근로 시간**

- 1) 주당 근로시간은 비상 사태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60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2)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매7일 마다 최소한 하루의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주당 정규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사업장은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

### **A4. 임금과 복리후생**

-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2)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 및 자격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
- 3)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한다.
- 4)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 5)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임시직, 파견직 및 외부 용역은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A5. 차별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 1)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위협은 금지한다.
  - 고용주는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 은퇴 군인 연금 자격, 유전정보 기밀 또는 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 하거나 괴롭힘은 없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신 검사를 비롯한 의료 검진 및 신체검사를 금지해야 한다.
- 2) 지침의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 A6.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1) 고용주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2)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3)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권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는 대체 형태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있다.

## B. 안전보건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B1. 산업 안전보건

- 1) 안전보건 위험(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추락 위험 등)에 노출될 가능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통제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완화해야 한다.
- 2)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위험요소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3) 임산부 및 수유부와 그 자녀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근무조건에 있지 않아야 하며, 수유부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성별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B2. 비상사태 대응 방안

- 1)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비상 상황 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비상 훈련은 매년 실시해야 한다.
  - (포함 사항) 비상 계획에는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는 명확한 출구(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
  -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B3. 산업 재해 및 질병

- 1)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포함 사항)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
- 2)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업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주는 상황이 완화되기 전에 복귀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 **B4. 산업 위생**

- 1) 통제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 2)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개인 보호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
- 3)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 작업장 건강 모니터링 제공
- 4)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자료는 작업장 위험 노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B5. 육체노동**

- 1) 육체노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한다.
  - (위험요소) 수작업 및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장시간 서 있는 작업, 심하게 반복적이거나 체력 소모가 심한 조립 작업

## **B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 1)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험요소를 평가해야 한다.
- 2) 기계 설비로 인해 근로자가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한다.

## **B7. 위생, 식품 및 주거**

- 1)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2) 직원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장치,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개별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한 출입 통제 장치가 마련된 적절한 크기의 개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 **B8.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 1)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확인된 작업 현장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안전보건 정보와 교육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 포함)로 제공해야 한다.
- 2)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 및 연령과 같은 관련 인구통계에 대한 특정 위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3) 업무 시작 전과 업무 중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4) 근로자들에게 건강 및 안전 우려사항을 보복 없이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불이익 금지)

## C. 환경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제조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C1. 환경 허가 및 보고

- 1)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승인 및 등록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C2. 오염 방지 및 자원 보존

- 1) 배출가스, 오염 물질 방출, 폐기물 생성을 원천에서 제거하거나, 오염 통제 장비 추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 2) 생산, 유지 관리, 재료 대체, 재사용, 보존, 재활용 또는 기타 수단을 활용하여 천연자원(물, 화석연료, 광물, 원시림 산물 등)을 절약해야 한다.

### C3. 유해 물질 관리

- 1)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를 위해 해당 물질을 파악하여 라벨을 표기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C4. 고형 폐기물 관리

- 1) (유해하지 않은) 고형 폐기물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법을 실행해야 한다.
- 2)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C5. 대기 관리

- 1)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연무제, 부식제, 미세먼지,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은 배출 이전에 특성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감리하며 통제 및 처리해야 한다.

- 2) 오존층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3) 대기 배출가스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 **C6. 물질 규제**

- 1) 재활용 및 폐기 라벨 표기를 비롯해, 생산 및 제조에서 특정 물질 이용 금지 및 제한 관련 모든 법규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C7. 물 관리**

- 1) 수원과 물 사용 및 방출을 기록, 감시하고, 물 보존 방법을 모색하며 오염 경로를 통제하는 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 2) 모든 폐수를 방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특성을 파악하고 감시하며, 통제 및 처리해야 한다.
- 3)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억제 시스템의 성능을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 **C8.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 1) 전사차원의 절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한다.
-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모든 범위 (SCOPE1, SCOPE2, SCOPE3)를 추적, 문서화 및 공시를 해야 한다.
- 3)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D1. 사업 청렴성 및 부당이익 금지

- 1)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 2)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한다.
- 3)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기타 수단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 (포함사항)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
- 2) 반부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감시, 기록 관리 및 집행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 D2. 정보 공개

- 1)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사업 장부와 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2) 노동,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지배적인 업계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3) 공급망 내 관련 분야의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의 위조나 허위 진술은 용납되지 않는다.

### D3. 지적 재산권 보호

- 1)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 2) 고객 및 공급업체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D4.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 1)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D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 1)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내부고발을 한 공급업체 및 근로자의 기밀성, 익명성 및 신원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 2)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리고 유지해야 한다.

## **D6. 개인정보보호**

- 1)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한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E. 관리 시스템**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위험의 파악 및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E1. 기업의 준수 의지**

- 1) 경영진이 승인한 인권, 안전보건, 환경 및 윤리 정책 선언문이 작성되어야 하며, 실사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기업의 약속이 확인 되어야 한다.
- 2) 이러한 정책 선언문은 공개되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E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1)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은 경영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E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 1) 본 규범의 요건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규정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 **E4. 위험 평가 및 관리**

- 1)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 및 환경 영향의 위험을 포함하여 법적 준수,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위험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 2)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과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적/물리적 통제수단을 실시해야 한다.

### **E5. 개선 목표**

- 1) 사회적, 환경적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을 밝힌 문서를

수립해야 하며, 목표 달성에 대해 성과 진척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 **E6. 교육**

1)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에 옮기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E7. 커뮤니케이션**

1)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직원과 공급업체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E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규제책 접근**

1) 근로자, 그 대리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2) 이 프로세스는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운영 관행 및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 **E9. 감사 및 평가**

1) 법률 및 규제 요건, 본 규범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E10. 시정 조치 절차**

1)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 **E11. 문서화 및 기록**

1) 규제 준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밀 유지 및 회사의 요구 사항을 지키기 위한 문서 및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 F. 공급망 관리

솔브레인 협력사는 솔브레인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정책 및 규범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하위 공급망에 전파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1. 기업약속

- 1)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는 서약을 해야 한다.
- 2)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게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 F2. 원재료 제한

- 1) 제품의 포장 및 구성 요소 및 화학 성분이 고객 및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제품에 대해 사양, 진술 및 적합성 인증서가 정확해야 하며, 품질수준은 기록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 F3. 책임 있는 광물 조달

- 1) 기업이 조달하는 책임/분쟁광물의 출처 및 관리망에 대한 정책의 채택 및 실사를 통하여, 책임/분쟁광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에 의한 조달임을 보장해야 한다.
  - 분쟁광물 : 3TG(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 책임광물 : 코발트, 운모, 아연, 알루미늄, 구리, 리튬, 니켈, 마그네슘
- 2) 솔브레인에서 요구하는 책임/분쟁광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 F4.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 1)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급망 방침/규범(강령)을 수립해야 한다.



#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표준

(Version 2.0\_2024.05.31)

솔브레인은 본 규범을 준수합니다.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한철

##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표준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표준」은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을 바탕으로, 솔브레인 협력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솔브레인이 솔브레인 협력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본 표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문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표준」은 법규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 UN 비즈니스 및 인권 지도 원칙, 국제 노동 기구(ILO) 핵심 협약, UN Global Compact의 10개 원칙과 같은 국제 표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규범과 지역 법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 A. 노동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A1. 강제 노동 금지

#### A1.1 강제 노동 금지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 (예, 강제노동, 노예 계약에 묶인 노동, 채무변재를 위한 노동, 인신매매에 따른 노동, 죄수노동, 징역 노동)은 없어야 합니다.

*A-1) 사내에 강제 노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A1.2 강제 노동 금지 정책/절차

취업규칙에 강제 노동 및 비자발적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A-2) 취업규칙 또는 인권정책에 강제노동 금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1.3 모국어 계약서 체결

근로자의 모국어로 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A-3) 모국어로 된 근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 A2. 연소 근로자

#### A2.1 아동근로 금지

최저연령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노동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A-4) 사내에 아동근로가 확인 되지 않습니다.*

#### A2.2 아동근로 금지 정책/조치

최저연령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자들을 직접 또는 3자 고용기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정책과 발견 후 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A-5) 취업규칙 또는 인권정책에 아동근로 금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3. 근로 시간

### A3.1 근로시간 준수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법적인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6)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법적인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A3.2 근로시간 관리 정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신뢰성 있고 상세한 기록으로 관리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의사소통하고, 근로시간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방침과 시스템/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A-7)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A3.3 법정휴식/휴가 보장

근로자는 매7일마다 최소한 하루의 휴무를 보장받으며, 법정휴식/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A-8) 근로자들 휴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A4. 임금과 복리후생

### A4.1 정확한 임금 산정/지급

정규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법정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A4.2 급여명세서 제공

각 급여 주기 동안 적절한 시기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수행한 근로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9)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A5. 차별금지/괴롭힘 금지/인도적 대우

### A5.1 비인도적 대우 금지

성희롱 또는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폭언 또는 위협, 폭력, 성폭력, 따돌림, 공공의 수치심 유발, 육체적 휴식의 제재, 가족으로부터 고립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A-10) 임직원 고충처리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A5.2 인도적 대우 관리 정책

인간적인 작업환경과 근로자들의 공정한 대우를 위한 방침과 징계절차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A5.3 차별금지 정책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A-11) 취업규칙 또는 인권정책에 비인도적 대우관리 및 차별 금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6.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 A.M 관리시스템

#### A.M.1 위험성평가

#### A.M.2 제어 프로세스

##### A.M.2.1 취업규칙 최신본 개정

취업규칙에 대해 최신본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A.M.2-1) 취업규칙에 대해 최신본으로 개정 여부 확인*

##### A.M.2.2 인권정책 문서화

인권정책에 대해 최고경영권자의 승인과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A.M.2-2) 인권정책에 대한 최고경영권자 승인 및 문서화 여부 확인*

#### A.M.3 커뮤니케이션

#### A.M.4 성과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

## B. 안전보건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B1. 산업 안전보건

#### B1.1 산업안전 인허가 취득

산업안전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하고, 검사를 받아 인허가증, 인증서 또는 보고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인허가를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B-1) 건물 및 설비에 대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인증이 최신상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 B1.2 개인보호장비 제공

산업안전 유해요인을 다루거나 작업자의 유해위험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B-2) 근로자에게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B2. 비상사태 대응 방안

#### B2.1 소방시설 구비

적절하고 효과적인 화재 감지, 경보, 소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B-3) 시설 내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시스템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B2.2 비상대피 훈련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화재, 그 밖의 확인된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B-4)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 B2.3 비상대피도

시설 내 (현위치와 집결지가 표기된)비상대피도가 적절히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B-5) 시설 내 (현위치와 집결지가 표기된)비상대피도가 적절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 B3. 산업 재해 및 질병

### B3.1 산업 재해와 질병 인허가 취득

사업장은 관리 체계에 따라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 유해인자 : 소음, 분진(7종), 화학물질(163종), 야간작업(2종)

**B-6) 일반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 1년1회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B4. 산업 위생

### B4.1 산업 보건 인허가 취득

산업 보건 검사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가 구비되고 검토 가능해야 하며, 인허가 또는 법적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B-7)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B5. 육체노동

### B5.1 유해공정 작업자 관리

육체적 과중업무(근골격계 부담작업)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관리조치가 마련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 반복작업, 무리한 동작, 중량물 작업, 장시간 서 있기)

**B-8) 작업장 내 육체적 과중업무(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없습니다.**

## B6.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 B7. 위생, 식품 및 주거

## B8. 안전보건 커뮤니케이션

### B8.1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적 요건에 맞게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B-9)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B.M 관리시스템**

### **B.M.1 위험성평가**

#### **B.M.1.1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통제**

근로자의 잠재적 위험 요인(감전, 화재/폭발, 추락, 전도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B.M.1-1) 근로자의 잠재적 위험 요인(감전, 화재/폭발, 추락, 전도등) 확인*

#### **B.M.1.2 비상구/통로 관리**

효과적인 피난구 접근성, 건물 바깥쪽으로 피난구가 그 수와 위치 면에서 적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적절히 관리합니다.

*B.M.1-2) 효과적인 피난구 접근성, 피난구 수와 위치, 접근 용이성, 관리 여부 확인*

#### **B.M.1.3 구급함 관리**

부상을 당했거나 아픈 근로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역에 구급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급함에는 적절한 의약품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B.M.1-3) 적절한 구역에 의약품이 포함된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B.M.1.4 기계설비 안전 유지**

모든 기계설비에 적절한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B.M.1-4) 모든 기계설비에 적절한 안전장치가 구비여부 확인*

### **B.M.2 제어 프로세스**

### **B.M.3 커뮤니케이션**

### **B.M.4 성과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

## C. 환경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환경적 책임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제조공정에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천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보건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 C1. 환경 허가 및 보고

#### C1.1 환경 인허가 보고

모든 시설은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환경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 대기배출 : 대기환경보전법(23조, 30조)

※ 폐수방류, 우수오염 : 물 환경보전법(33조, 37조)

※ 방사선안전

※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 화학물질관리법(28조)

※ 폐기물 배출 : 폐기물관리법(17조)

※ 경계, 소음, 진동 : 소음진동관리법(8조)

**C-1) 모든 시설에 대한 환경 인허가(대기, 폐수, 약취,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C1.2 환경 당국 보고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환경 당국에 대한 보고를 시의 적절히 실행해야 합니다.

**C-2)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C2. 오염 방지 및 자원 보존

#### C2.1 오염물질 및 자원 사용 저감

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배출, 폐기물 생성을 확인, 관리,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C-3) 환경경영체제(ISO14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C3. 유해 물질 관리

### C3.1 유해 물질 자격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 및 면허를 취득한 업체를 통하여 유해물질 운송과 처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C-4) 현지 규제 당국의 승인 및 면허를 취득한 업체를 통하여 유해물질 운송과 처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C4. 고형 폐기물 관리

### C4.1 폐기물 처리

현지 법규와 인허가 요건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C-5)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폐기물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C5. 대기 관리

### C5.1 대기배출 모니터링

대기 배출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기 배출 제어 시스템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C-6) 대기 배출원 목록(오염물질의 성분과 질량, 비율 정보)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C6. 물질 규제

### C6.1 법적 규제 준수

유해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7) 화평법/화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C7. 물 관리

### C7.1 폐수처리

현지 법규와 인허가 요건에 따라 산업 폐수 및 오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C-8)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를 활용하여 폐수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C8.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 C8.1 에너지와 온실가스 모니터링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C-9) 직접배출원에 대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직접배출원 (SCOPE 1) : 사업장 내에서 사용된 화석연료를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C-10) 간접배출원에 대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간접배출원 (SCOPE 2) : 사업장 밖에서 생산된 에너지(전기)를 구매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C-11) 외부배출원에 대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외부배출원 (SCOPE 3) : SCOPE 1, 2 이외의 기타 배출로, 광범위한 경영활동 과정과 벨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 C.M 관리 시스템

### C.M.1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 C.M.1.1 유해물질 취급 관리

화학 물질 사용 및 보관 장소에 MSDS를 게시해야 하며 방재도구 및 개인보호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안전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C.M.1-1) 화학물질 사용 및 보관장소에 MSDS를 게시하고 방재도구 및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안전 라벨을 부착합니다.*

#### C.M.1.2 고형 폐기물 관리

폐기물 보관장소는 분리, 이중격납, 환기, 위험 표지와 정보 등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C.M.1-2) 폐기물 보관장소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분리되어 통제되고 있습니다.*

#### C.M.1.3 환경 소음 수준 준수

환경 소음 수준이 규제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C.M.1-3) 환경 소음 수준이 규제 한도 이내입니다.**

**※ 환경 소음 수준 : 낮70dB, 밤65dB (공업지역기준)**

**C.M.2 환경 제어 프로세스**

**C.M.3 커뮤니케이션**

**C.M.4 성과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

## D. 윤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D1. 사업 청렴성 및 부당이익 금지

#### D1.1 사업 청렴성/부당이익 금지

모든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D-1) 기업윤리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D1.2 윤리적 이슈 신고 채널

윤리적 이슈 발생시 신고 가능한 채널을 보유해야 합니다.

*D-2) 윤리적 이슈 발생에 대한 신고 가능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D2. 정보 공개

#### D2.1 허위문서 기록 금지

오보, 기록 위조 또는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 D3. 지적 재산권 보호

#### D3.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지식재산권과 고객/협력사들로부터 수령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D-3)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D4.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 D4.1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대한 정책

공정거래, 광고, 경쟁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D-4) 공정거래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D5.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 **D5.1 신원보호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및 고충처리 시스템 사용자의 신원보호와 보복 금지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D6. 개인정보보호**

### **D6.1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D-5)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D6.2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6)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D.M 관리 시스템**

### **D.M.1 위험 평가 (및 위험 관리)**

### **D.M.2 윤리 통제 절차**

### **D.M.3 커뮤니케이션**

### **D.M.4 성능 검토 및 지속적인 개선**

## E. 관리 시스템

솔브레인과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구축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은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본 규범 준수, 본 규범과 관련된 운영 위험의 파악 및 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 E1. 기업의 준수 의지

### E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 E2.1 책임 및 권한 배정

책임과 권한이 배정된 ESG 담당인원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1) ESG관련 조직 및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E3.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 E4. 위험 평가 및 관리

### E5. 개선 목표

### E6. 교육

### E7. 커뮤니케이션

#### E7.1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제3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공시해야 합니다.

*E-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제3자가 확인 가능한)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E8. 근로자/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책 접근**

**E9. 감사 및 평가**

**E10. 시정 조치 절차**

**E11. 문서화 및 기록**

## F. 공급망 관리

솔브레인 협력사는 솔브레인 공급망 정책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정책 및 규범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하위 공급망에 전파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1. 기업약속

#### F1.1 행동규범 준수 서약

솔브레인에서 제시하는 공급망 ESG 행동규범에 대한 준수를 약속해야 합니다.

*F-1) 솔브레인 공급망 ESG 행동규범에 대한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 F2. 원재료 제한

#### F2.1 법적 요구사항 준수

재료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F-2) 재료에 대해 MSDS제공 및 GHS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 F3. 책임 있는 광물 조달

#### F3.1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준수 서약

솔브레인에서 제시하는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에 대한 준수를 약속해야 합니다.

*F-3) 솔브레인에서 제시하는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에 대한 준수를 서약하였습니다.*

#### F3.2 공급망 정보 수집용 양식 작성 의무

공급망 정보 수집용 CMRT, EMRT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시에 솔브레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F-4) 공급망 정보 수집용 CMRT, EMRT를 작성하여 솔브레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F3.3 분쟁광물 정책 수립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F-5)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 F4.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 F4.1 공급망 행동규범 수립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급망 행동 방침/규범(강령)을 수립해야 합니다.

*F-6) 공급망 행동규범을 수립하였습니다.*